

의안번호	2210343
의 퇴 인	김정재 의원
회 답 일	2025.5.20.
추계번호	25C2718
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7조제1항 (모자보건기구의 설치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할 수 있는 모자보건기구의 업무 범위에 임산부의 유산·사산 대처와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 7. 임산부의 유산·사산(死産) 대처와 예방에 관한 사항
2	안 제11조제2항 (난임·유산·사산 극복 지원사업)	2. 난임 관련 상담, <u>심리치료</u> 및 교육 ※(현행법) 2.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
3	안 제11조의4제1항 (난임·임산부심리상담 센터의 설치·운영등)	2. 난임 극복, 산전·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·사산 예방 관련 상담, <u>심리 치료</u> 및 교육 ※(현행법) 2. 난임 극복, 산전·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·사산 예방 관련 상담 및 교육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7조제1항 (모자보건기구의 설치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1조제2항 (난임·유산·사산 극복 지원사업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3	안 제11조의4제1항 (난임·임산부심리상담 센터의 설치·운영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모자보건기구의 업무 범위에 임신부의 유산·사산 대처와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, 난임·유산·사산 극복 지원사업 및 난임·임산부심리상담센터 업무 범위에 심리치료를 추가하는 경우 기존 사업의 확대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모자보건기구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¹⁾하고 있으며, 상담 및 교육 등의 사업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
 - 개정안은 모자보건기구의 업무 범위에 임신부의 유산·사산 대처와 예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, 해당 사업들에 심리치료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난임 여성들의 심리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취지임
-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모자보건기구에서 수행할 유산·사산 대처와 예방에 관한 업무 내용을 현 시점에서 자세히 알 수 없으며, 필요한 인력 및 비용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 - 현행법 제7조제2항에 따르면 모자보건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추가되는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없음
- 또한, 난임·유산·사산 극복 지원사업 및 난임·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업무 범위에 심리치료를 추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사업 확대 여부 및 이에

1) 「모자보건법」

제7조(모자보건기구의 설치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모자보건기구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모자보건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보건소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.

1. 임신부의 산전(産前)·산후(産後)관리 및 분만관리와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
2. 영유아의 건강관리와 예방접종 등에 관한 사항
3. 모성의 생식건강 관리와 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사항
4. 부인과(婦人科) 질병 및 그에 관련되는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
5. 심신장애아의 발생 예방과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
6. 성교육·성상담 및 보건에 관한 지도·교육·연구·홍보 및 통계관리 등에 관한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모자보건기구의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.

따른 비용 규모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,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정보가 부재하므로 추계하기 곤란

- 현재 보건복지부는 상담센터 설치를 통해 난임부부, 임신부, 산모, 양육모 및 배우자, 그 외 가족들에 대한 상담과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
 - 중앙 및 권역 12곳에 상담센터를 설치·운영하고 있으며, 2025년 기준 예산 19억 5,100만원을 편성
 - 해당 상담센터의 주요 업무는 난임부부 및 임신부 대상 상담업무(대면·비대면), 자조모임 등 정서적 지지 프로그램 운영, 지역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고, 난임부부, 임신부, 산모(출산 후 12주 이내), 양육모(출산 후 3년 이내, 한부모의 경우 7년 이내까지) 및 배우자, 그 외 가족 등을 지원하고 있음
 - 개정안에 따른 심리치료 지원을 해당 상담센터의 인력과 시설 내에서 진행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으나, 신규 심리치료 지원으로 인하여 추가 인력을 배치하고 시설을 확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강시온	이진우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강시온	02-6788-4742	sionkang@assembly.go.kr